

■ 최신 법령 ■

[보험]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예고

배성진 변호사 | 이유경 변호사

변액보험 및 공시제도 개선, 보험 광고제도 개선, 지급여력금액 산정기준 조정, 공시이율 산출체계 관련 개선, 리스크 중심의 경영실태 평가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(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-132호)이 2012년 6월 21일 예고되어 2012년 7월 31일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. 예고된 개정규정안(이하 '안')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주요내용

가. 변액보험 및 공시제도 개선

- 1) 변액보험 상품 계약의 경우,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권유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계약의 승낙 이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(안 제4-35조의2).
- 2) 특별계정 자산을 계열회사 소속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경우 그 금액 및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고, 계열회사 소속 자산운용회사와 비계열회사 소속 자산운용회사별로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, 수익률 및 특별계정 운용 위탁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투자 일임보수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(안 제7-45조).

나. 보험 광고제도 개선

- 1) 보험협회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 종사자의 광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제정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(안 제4-35조의4 제4항).

- 2)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모집 질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고가의 경품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(안 제4-35조의4 제2항).

다. 지급여력금액 산정기준 조정

- 1) 합산항목을 기본자본(가용성, 영구성, 후순위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)과 보완자본(일부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)으로 분류하였습니다(안 제7-1조).
- 2) 금융위원회가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회사의 경우, 순자산 부족금액 중 보험회사의 지분을 상당 금액만을 지급여력금액에 반영함으로써 지급여력금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(안 제7-1조).

라.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

공시기준이율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하도록 하되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상품별로 일정이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, 조정률의 가감한도를 공시기준이율의 20%에서 10%로 변경하는 등 공시기준 산출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(안 제6-12조).

마. 리스크 중심의 경영실태 평가제도 도입

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 위주로 평가했으나, 보험·금리 등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리스크 중심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(안 제7-14조).

2. 다운로드 : 「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(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-132호, 2012. 6. 21.)